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5. . . (제 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가 탈퇴한 경우 해당 공동기금법인은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 보고토록 하여 탈퇴한 사업주가 배분받은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는 등의 의무이행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근로자 복지 사업의 지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탈퇴 시 보고의무 신설(안 제55조의5제5항 신설)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 사업주가 탈퇴 요건을 충족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탈퇴를 신청한 경우, 기금법인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탈퇴를 결정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탈퇴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규정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략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1. 28. ~ 2026. 1. 7.) 예정

3) 행정규제 : 협의중

대통령령 제 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5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공동기금법인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한 경우 탈퇴를 결정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5조의5(공동기금법인의 탈퇴 사유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u>⑤ 공동기금법인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한 경우 탈퇴를 결정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	
연락처	(044) 202 - 7765